

해뜨는마을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내부관리 계획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3조의2 및 제33조의3,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규정을 구체화하여 본 시설의 입소자의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 및 권리보호, 노인학대 방지, 노인요양시설의 보안 및 투명한 운영을 위함이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CCTV”라함은 일정한 장소에 설치된 촬영기기로 수집한 화상정보를 폐쇄적인 유무선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인만 수신할 수 있는 통신장치 일체를 말한다.
2. “화상정보”라함은 CCTV로 촬영된 영상에 의하여 당해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3. “정보주체”라 함은 화상정보에 의하여 식별된 사람으로, 당해 화상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연인을 말한다.
4. “정보처리”라함은 CCTV에 의하여 수집되는 화상정보를 입력·저장·편집·삭제 및 재생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해뜨는마을에 설치·운영하는 CCTV와 관련하여 수집처리되는 화상정보의 보호에 관하여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기본방침) 해뜨는마을에 설치하는 CCTV는 입소자의 안전, 노인학대 방지, 화재예방, 범죄예방 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CCTV 운영 및 관리

제5조(책임자 지정) CCTV 설치·운영 관리책임자(이하 ‘책임자’라 한다.)를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1. CCTV 설치·운영 관리자
 - 가. 책임자: 시설장 박혜경
 - 나. 운영(담당자): 사무국장 전경순(정), 사회복지사 오현정(부), 관리인(부) / 위탁업체 (주)진돗개 보안
2. 제1항에 따른 책임자는 해뜨는마을 CCTV 설치·운영, 화상정보의 수집 및 처리, CCTV 관련 민원의 접수 및 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3. 책임자는 운영자를 겸할 수 있다.

제6조(CCTV 설치) ① 노인요양시설은 CCTV는 총 47대 설치하며, 설치장소는 다음과 같다.

설치 위치	개수	설치 위치	개수
침실	19	물리치료실	1
프로그램	1	2층 공동공간(홀,복도 등)	3
면회실	1	외부	7
특별침실	1	휠체어리프트/엘리베이터	2
공동공간(홀,복도 등)	5	식당	1
지하 복도	1	주방	1
전실(주 출입구)	2	성당 앞	1
마음자리	1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CCTV는 정보주체가 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판을 대문, 후문, 별관측 출입문, 중앙출입문, 성당측 출입문에 설치한다.

③ 다음 각호의 CCTV 운영 장비는 해뜨는마을 1층 사회복지팀에 설치하며, 장비의 조작은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외에 조작을 엄격히 통제한다.

1. CCTV 운영모니터
2. 디지털 녹화기
3. 그 밖의 부대장치

제7조(CCTV 성능 및 촬영시간 등) 해뜨는마을 내 설치하는 CCTV 성능 및 촬영시간은 다음과 같다.

1. CCTV 성능: HD 400만화소
2. CCTV 촬영: 24시간 상시 촬영
3. CCTV 정보 보유기간: 60일
4. CCTV 저장: 400만화소(1920*1280픽셀), 초당 10프레임
5. 영상자료의 저장장치 또는 기기: 1층 사회복지팀에 있는 NVR
6. 영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장소: 1층 사회복지팀
7. 영상정보의 삭제 주기: 60일 경과 시 자동 삭제

제3장 화상정보 취급 및 관리

제8조(CCTV 사용 제한)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CCTV 운영자는 설치목적과 관계없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행위
2. 설치목적과 관련없는 화상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카메라 회전 및 확대(Zomm-in)기능을 사용하는 행위
3. 녹음기능을 탑재하거나 녹음을 하는 행위

제9조(화상정보 처리 제한) ① 책임자는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를 CCTV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거나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제공 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주체에게 열람·제공하는 경우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영상정보, 정보주체인 입소자가 본인의 안전 확인,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본인과 관련된 사항을 확인할 목적인 경우
.보호자가 입소자의 안전을 확인할 목적으로 요청하는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때로서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행태로 제공하는 경우
4. 정보주체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때로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못할 급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5. 범죄의 수사과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6.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방법, 시설보호, 화재와 관련하여 영상정보 확인이 필요한 경우

제10조(화상정보의 이용 제공처리 제한 및 비용) ① 책임자는 처리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열람을 허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사유와 법령상 근거 및 당해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 7호 서식의 열람제한사유를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 1항에 따른 열람 등을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3. 영상정보 열람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사생활이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큰 경우
4. 기타 책임관이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의 경우
5.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6.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청구인이 당해 결정에 대해 불복 시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절차 및 방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④ 책임자는 보유목적에 따라 화상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도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그 이용 또는 제공을 제한하여야 한다.

⑤ 관리책임자가 열람 등 조치를 취하는 경우, 정보주체 이외의 자를 명백히 알아볼 수 있거나 정보주체 이외 자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되는 정보주체 이외 자의 영상정보를 알아볼 수 없도록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정보주체 이외 자의 영상정보를 알아볼 수 없도록 하는 보호조치에필요한 모든 비용은 실비의 범위에서 청구인이 부담한다.

제11조(처리정보의 정정 및 삭제 등) ① 제10조에 따라 본인의 처리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책임자에게

화상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책임자는 처리정보의 정정 및 삭제청구를 받은 때는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열람의 허용여부, 열람일시 및 장소를 결정하고 정정(삭제) 조치 결과통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책임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책임자는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서면(정보통신망포함) 통지하여야 한다.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대한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특정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3.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4. 그 밖에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제12조(화상정보 보호조치) ① 책임자는 제6조3항에 따른 CCTV 운영 장비 설치 장소를 출입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CCTV 화상정보 접근권한은 제2장의 제5조(책임자 지정)에 정하는 자로 제한한다.

③ 책임자는 CCTV 화상정보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직원에 대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화상정보 보관 관리) CCTV에 의하여 수집된 화상정보의 보관기간은 수집 후 60일 이내로 하며, 보관기간이 만료된 자료는 삭제 조치 하여야 한다.

제14조(장비관리) ① 책임자는 CCTV 장비에 대해 CCTV 운영관리기록부에 따라 주1회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② 책임자는 CCTV 장비에 장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수리하여 신속히 원상복귀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4장 보칙

제15조(사무의 위탁) ① 책임자는 CCTV 설치 운영·관리 등 필요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화상정보가 오·남용 되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고, 수탁자에 대하여 관리·감독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수탁자로서 화상정보에 대하여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는 제12조제3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16조(비밀유지의무) 화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화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제17조(준용규정) 이 지침에 정하는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보건복지부, 2022)」, 「개인정보보호법」,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통신비밀보호법」, 「행정절차법」등을 준용한다.